



[2018. 12. 28.] [

56 , 2018. 12. 28.,]

() 02 - 2110 - 2357

1

1 () 「 」

2 ()

1. " (" ")"

2. " " 가

3. " " (" ")

4. " " 가 2 , (" ")

5. " "

6. " "

7. " " 가

8. " " 「 」 2

9. " " (), (),

10. " " (" ") 가 가 가,

11. " "

, 「 」 ,

12. " " 가 ,

13. " " , , , ,

14. " " .

15. " " 가

16. " "

17. " " , ,

18. " " , , , 가 , , , ,

19. " " .

20. " "

21. " "

20

22. " " 「 」 2 .

23. " " 「 」 2 1 .

24. " " 「 」 9 1

25. " " 「 가 」 17 2

3 ()

1. 「 」 (" " .) 6

14

2. 「 」 6 2

3. 「 」 8

4. 「 」 12

5. 「 」 3

6. 「 」 12

7. 「 」 17 18

8. 「 」 31

9. 「 가 」 18

10.

1. 「 」 「 」
「 」 (" ") 가
「 」 (" ")
(가 가)
가 .)

2. 「 」

2

4 ()
(" ")

1. .

2. ,

3.

2 20 .

1 5

5 가, .

가

2

1 ,

가

, 1 10 .

5 ()

. . . 가

1 20

가

, 1 9
가

6 ()

가

")

("

7 ()

가 가

가

가

8 ()

가

,

9 ()

1

(,)

, 10

1.

2.

3.

4.

5. 가 가

6. 가 가 . 가

7.

8.

9.

10 () . 가 「 」
 , 「 」 , 「 」

32

. , . . 「 」

32

1.

2.

3. 가, . 가

4.

5.

6. 45 1

7. 45 4 가

8.

9. . .

10.

1

가 . 가 . 가

11 () . .

10

1.

2.

3. 가 가

4.

2 3

가,

26 2

)

(

12 ()

,

, 3

1.

2.

3.

4.

5.

6.

7.

8.

9.

10.

가

(" "

)

11.

12.

(" "

)

13.

14.

1.

2.

3.

4.

5.

6.

7. 가

8.

1

2

1

10

12

3

13 ()

1.

2.

3.

4.

5.

6.

가

1. 가

2. 가가

3.

4. 가 ,

5.

6.

14 ()

가
가
1
1

1.

2.

3.

4. ,

5.

6. 가

15 ()

(" ")

() , ,

10 1

10

4 ,

16 ()

30

가 ,

1. 가 .

2.

3. 가 가 가
가

1

1. ,

2.

3.

4. 가

5. . 가

6. 40 3

7.

1 가 (「 」 11 2 2
가 .) .

1.

2.

3. 가

4. .

5. ()

6.

7. , , 가 . , 가

7 2.

8.

9.

17 () 가 .
, 가 가
. , 40 3 1 (" ") 가
가

1 가 . 41 6 가
가 가 ,

가 가 , 가 15

1 가

10 1 가

가 . , ,

1.

2. ,

3.
4.
5.
6.
7.
8.

1.
2.
3.
4.

·
()·
40 3
가
가
가
가
3 33 1 가 가
· · 가
「 」 10
· ·
· · R&D ·
· · ·
3 43 2 가
가
· · 가 가
·
") 1 가 가 (" 가
) 가 16 4 가 가 (가 가
·
가 10
·
1 가 가 가 60% ()
70%)
8
2 가 가 1 , 5
7
· 2 · , ,
·
4 1 가
· , · ,
·
8
15 16 4 (「 」

2 1 .) . , 9
2
(" . ") .

18 () 가
가 가 5 ,
3 . ,

1. 16 2 4
2. , . 가 . .
3.
4.
()

5.
6.
7.
8.

가

1. 가 6 ,
2. 6 (, ,
)
3. 1 2 가 6
가

2 8 ,
41 1 .

19 () 17
30 1 (" "
) . ,
1 2
, 가 .

3

17 9
가

1

(2)

가

2

1 3

1 2 3
)

(「 」

2 3

14 2

()

()

가

7 8

가 17 8

30

, 8

()

16 4

2012-80)"

(18

)

7 8

30

1 2

2022 12 31

가

5 1 18 34

(" "

) 1 .

12 , 1

20 ()

19

2

19 3

(" ")

가

가

3/4

5

1. 가 가 ,

2. 가

21 ()

가

1. 가

1 2. , 17

13

1 3. 1

-
2. 가
 - 3.
 - 4.
 5. 가 45
가 (.)
 6. 33 1 . 가
가
 7. . 가
 8. 40 가 가 가
 9. 43 2 가
 10. 가 「 」 17
. 가
 - 11.
 12. 가
1 가
. 1
1
. 1 2 5 , 7 9
, 11 12
, 「 」 11 2 .
3 가 .
가 . 가 . 17
2 .
5
22 () (.
) , 3 .
-

(RFP)

3

()

11

23 ()

(" ")

「 가

」 18

(" ")가

가

1.

2.

가

4

4

4

4

, 22 1

4

가

19

8

9

()

2

가 5 1 3

19 1 2

30

6

45

가

24 () 23 4

1. 가

2. , 가가 「 」, 「 가가 」

3.

4. 27 2

5

23 4

「 가 」 (" ") 12 3 1

22 1

23 4

, (" ") 가

2

가

1.

2.

()

()

25 ()

(" ")

() 1% 가 가

17 14 (17 9)

23 4 3 5

1. :

2. : 3()

22 1

1.

2.

3. 24 3

(,)

3

50%

19 3

26 2

()

23 1

26 ()

17 14

22 1 (" ")

1. 3 (가가)

가.

2. 17 9 가 ()

3.

4. 20

5.

27 () 30

1. : 5

2. :

, , 가 , ,

5,000

「 」 「 」

, 2

2 「 」

28 ()

, 5 6 가 3

(14 가

)

1.

2.

3. 41 10

가

4.

가

4

4

1

29 (

)

6

28 1

5%

(,

.)

(6),

1. 28

2.

3. 27 1

30

(,

27 1

)

4.

3

3

,

14

가

(,

가

)

12 3 1

3

, 30 1

41 2 가

3 가 가

3 27 2

30 ()

, 29 2

29 3

15

1. 26 2

2. , 21

1 2 4 7 9

3. 12 3 1

가

7 , 1

1 33 1 가 가 34 3

가

2 7

「 」 2 1

가

3

가 가

28 29

1 8
1 8

1 8

8

31 ()

1

10 8

가

가

6 가, ,

32 ()

(17 9

(

) ,

가

가

1 ()

- 1.
- 2.
- 3.
- 4.

5.

6.

7.

8.

9. 41 2 가 .

10.

1

45

() 가

3

가

1

3

,

.

,

33 (가)

,

가

가

,

가

. , 17 9

가

.

,

가

가 .

1

가

가

가,

가

가

, 1

가

가

.

1.

2.

3.

,

(,

가

)

4. 가

가

가

가

가

,

가

.

.

가

.

17 2

.

가 40 3 1

가

가

. 가

, 21 1

,

가

가

.

,

가

,

가

.

가 , , .

가

30

가

가

, 가

, 가

7

가

가

33 2()

가

32 1

가

가

가

가

33 2 . 3 . 5

. 6 8 10 .

1

가 가

34 3 1 2

2

20

34 (가)

33 1

가 가

, 가

1. 가

2. 가 60

1. 가

2.

33 1 가 가

1. 가 가 가 10 , 가 90 (')

2.

가

3.

가

33 1 가 가

33 1 가 가
가 가

3 ,

3 가

1.

1 2.

2.

33 1 가 가

35 () 32 1 ()

가 ,

41 7 () 「

」

가

가

2 11

1 4 , 가

3 3

1. 40 3 : 3

2. : 1 6

3. 가 : 1 6

4. : 1 6

4 6 2 4
가

36 () , ,
(試作品) (" ")
) , ,
,
,
,
가

- 1.
- 2.
- 3.

「 」 13 , ,

「 」 11 3 1 가

(" ") 1 3
()

(無償)

1. 1
가
2. 2 3
38

1.

6

2.

/

3.

3

4.

가

90

37 (

)

가

(「

」 2

1

.)

가

1.

2.

가

3.

가

가.

1

1

1

1

4.

가

5.

가

가

가

5

2

12

33

가

가

3

가

가

39

」 11

」 25

36 2

가

7

1

」 35

가

가(

가 .)

7

38 () 「 」 11 4 1

」 11 4 1

1. : 10

2. : 20

3. : 40

30

13

3 31

1

14

15

11 4 1

3 31

가

가 17

1.

2. ,

3. 가

4. 가 36

5.

가

1

5 ,

30

1. : 1

2. : 2

3. : 4

9

12 ,

24 ,

48

1. : 1

2. : 2

3. : 4

1

1

20

21

1.

2. / /

3. / /

4.

5.

1

49

38 2()

38 1

2022 12 31

6

2

38

9

5

1

2

, 1

2

100 50

2

가

38 1

39 ()

3

1

3

1.

5

:

2.

50

:

3.

10

:

4.

1

3

:

(「

」

5

3

1

)

3

1.

38 1

:

2.

1

:

2 1

3

16 2

3 31

38 1 39 2 1 「 가 」 .

1 2

. , 1

20

9 , 1 2 1 4

6

「 」

2 6

6

8

40 () ,

가 가

1. : 가 가

가.

. 「 」 2 2 가

. 「 」 19 1 32 2 가

가

2. :

1 , 3 ,

41 () , 가 가 ,
(
) . 가 가
 , 가
 .

. 3 3
 가 . 30 가
, . , ,
가 .
 .
17 4 4 . 3
 .
가, 가 ,

- 가 .
1.
2.
3.
4.
5. 가
6. 가

가
, .
, .
 . 10 .
가 .
1. , . () ,
2. . 가 가 , 가 , 가 , 가
 , 가 가
3. .
4. , ,
5.
2 . 가
 .

1.

2. . (.)

3. . 가

4. . , . ,

5. . , , , , ,

6. .

8

25 4 10 1 ,

1. . , , , 가

(" ") ,

2. 19 4

3. 1 . 가

4.

42 () 30

가 , . 가 가

9

43 ()

1 " " , , .

1.

2.

3.

44 ()

10 가

45 () 「 」 11 2 1

10 2 .

- 1.
- 2.
- 3.
- 4.
- 4 2.
- 5.
- 6.
- 7.
- 8.

「 」 11 2 1 가 가
16 2 10 2 .
「 」 11 2 1 4 4 2 가
가

「 」 11 2 1 가 가
가 . 가
가 .

1. (師弟) 「 」 777

2.

3.

4. 가 가

6 .

6 가 .

6 8 가 .

「 」 11 2 1 4

30

「 」 11 2 1 11 . ,
 가
 33 1 가 「 」 11 2 1
 10 2 2 가
 , 11

- 1.
- 2.
- 3.

1 1 8 가
 「 」 11 2 1 3
 가 「 」 11 2 2 가

45 2() 11 2 6
 15

- 1.
2. (10)
- 3.
- 4.

45 3(가) 「 」 11 2 7 가 (")
 가 " .) , 11 2 .
 1 가 45 6 가

45 4(가) 45 3 가
 가
 1 30 가
 , 가
 가 7 .
 2 가 가 , 가

46 () 가 ,

46 2()

가

1.

2. 가 (産業群)

1 (" ") 16

1

17 4

1.

2.

33 1 가

, 가

33 1 가

가

33 1 가 34 4 17

7 45

1.

2. 가

6

가

16 1 17 1

19

46 3() 「 」 12

23 3 4

,

47 () 17 , 33

가

45

7

10

, 가 , , 가

48 () 16 47 " " "
" , " " " " "
() ()

49 () 가

50 ()

51 ()

가

52 ()

53 ()

54 () 「 (334)
2016 1 1 3 (3 12 31)

< 56 ,2018.12.28.>

[별표 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제17조제12항 관련)

1.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

- 가. 평가위원은 제41조제6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외전문가를 포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 1)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3) 대학의 해당 분야 조교수 이상인 사람
- 다. 연구개발과제별로 평가위원을 산·학·연에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위원 제외대상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다만,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시제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이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
 -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 3) 상호간 평가자
비고: “상호간 평가자”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과제 A와 연구개발과제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a가 B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b가 A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 4) 평가대상 과제와 관련하여 용역·자문·감정·조사 등을 한 사람
- 다.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위탁연구책임자는 제외)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 라.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 마.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 바. 제45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전문가
- 사.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3. 그 밖의 사항

평가위원 선정 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

(제17조제12항 관련)

1. 가점 부여항목

- 가.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가점 부여
- 나.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 다.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기술출자·기술창업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 라.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연구목표의 조기달성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간 선정평가점수의 5% 이내 가점 부여
- 마.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경우

2. 감점 부여항목

- 가.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제43조제2항의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0% 이내 감점 부여
- 나.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 다.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 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 마. 최종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감점 부여
- 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 사.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경우

[별표 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제22조제1항 관련)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p>○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p> <p>○ 계상기준</p> <p>1. 소속 기관(재직중인 기관 포함)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p> <p><인건비 산정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세 부 산 정 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td> <td>연봉제 적용기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td> </tr> <tr> <td>연봉제 미적용기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급)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td> </tr> <tr> <td colspan="2">기 타 기 관</td> <td>○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여액 × 참여율</td> </tr> </tbody> </table> <p>※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서의 참여현황을 명시</p> <p>※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p> <p>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p> <p>※ 기획·평가연구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에게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p>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급)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여액 × 참여율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급)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여액 × 참여율											

		<p>을 계상이 가능하다.</p> <p>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p> <p>※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p> <p>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의 범위는 [별표12]를 따르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과제 선정 시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다.)</p> <p>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p> <p>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p> <p>라. 그 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p> <p>※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p> <p>마.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단,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 총액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p>○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학생 인건비</p>	<p>○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리서치 펠로우 포함)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p> <p>○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p> <p>○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 지급하는 인건비</p> <p>○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함</p> <p>○ 계상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p>※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연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박사 후 연구원으로 구분하여 정하되, 연구책임자 및 학과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4. 박사후 연구원 : 소속 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연구기관의 장은 4대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개인 및 기관 부담분을 포함하여 제1항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직접비	연구장비 · 재료비	<p>○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대입·조성비,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설계·건설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 등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경우 최근 5년 이내 한해 구입한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2.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시약 및 재료투입은 현물로 산정. 이때 현물가액은 수행기관이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3.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이 보유한 시제품·시작품은 자산으로 등재된 경우 현물로 산정 가능하며, 기준 단가는 자산등재 가격으로 계상 <p>○ 방사광가속기, 나노랩 등 대형연구장비 등의 사용료는 동 항목에 계상할 수 있다.</p> <p><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동연구 환경 구축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및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전산처리비
	연구활동비	<p>○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체재비를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

		<p>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기술도입비 등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정보DB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제외한다)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p><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연구 과제 추진비		<p>○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p>○ 계상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p><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p>

		<p>-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p> <p>○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 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p> <p>○ 계상 및 사용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으로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계상한다. 협약으로 정하는 금액 은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다. <p>○ 지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 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제책이체함
	<p>위탁 연구 개발비</p>	<p>○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p> <p>○ 계상 및 사용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당초계획대비 20% 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간접비</p>	<p>간접비</p>	<p>○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p> <p>1. 인력지원비</p> <p>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 (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 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p> <p>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 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사전에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p> <p>2. 연구지원비</p> <p>가. 기관 공동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동지원경비</p> <p>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p> <p>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 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경비</p> <p>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p> <p>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 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 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p> <p>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장관이 별도 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p>

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계상하되,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는 예외로 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1억 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 구입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등록 등 표준화(인증포함)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계상 및 사용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은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6.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

		7. 1억 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 구입시 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	--	---

※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합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대학은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실험실 운영 지원비'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실험실 운영 지원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6. 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검수 등을 총괄·관리 하여야 하며, 기자재 등 물품 구매 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7. [별표 3]의 연구수당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출연(연) 지원사업으로 인건비만 이관된 사업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관련 인건비를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고, 이와 연동하여 연구수당을 계상할 수 있다.

[별표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제23조제3항 관련)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p>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p> <p>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p> <p>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p> <p>라. <삭제></p> <p>마.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p> <p>바. <삭제></p> <p>사.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p>	<p>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p> <p>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단, 장관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협약하는 과제의 참여기업이 제19조제12항에 따라 신규채용 한 청년인력 외에 청년인력을 추가로 신규채용 한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p> <p>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단, 장관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협약하는 과제의 참여기업이 제19조제12항에 따라 신규채용 한 청년인력 외에 청년인력을 추가로 신규채용 한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p>	<p>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p> <p>나. 직접경비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p>

※ 비고

1.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을 적용한다.
2. 과제협약일 당시 참여기업이 모두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인 경우에는 제1호다목과 제1호마목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을 총 연구개발비의 80퍼센트 이내로 한다.

[별표 5]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제25조제3항 관련)

항 목	사 용 방 법	
	카드사용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인건비		○ 기관 내부, 외부 연구원 인건비
학생인건비		○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부대경비 ○ 시약·재료·구입비 ○ 시제품·시작품·파일럿플랜트 제작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 (국내 수입대행사 경우 시 제외) ○ 외·내부 컴퓨터사용료 및 전산처리·관리비 ○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낙찰가가 공개되는 R&D 물품 구입비
연구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 ○ 세미나 개최비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 카드 사용 해당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출장비(관련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회의수당 및 국내외 전문가활용비 ○ 국내외 교육훈련비 ○ 기술정보수집비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등 ○ 기술도입비 ○ 특허정보조사비 ○ 정보DB사용료 ○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이외분 ○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낙찰가가 공개되는 기술용역비 ○ 외부시험분석료 및 내부시험분석료
연구과제 추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비, 식대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국내출장비(숙박, 교통, 식대 포함) 및 시내교통비
연구수당		○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위탁연구 개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연구기관의 해당계좌에 이체 ○ 위탁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 과제에 준하여 집행함

[별표 6]

연구개발사업별 정산업무 분담내역(제29조제1항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 연구기획평가사업 과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산 과제를 제외한 그 밖의 과제에 대한 정밀정산	◦ 주관연구기관 수행과제 ◦ 협동, 위탁과제

[별표 7]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제30조제2항 관련)

사업명	종합관리계좌
기초연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연구재단 종합관리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설은행: 국민은행 대전원동지점 - 예금종목: 보통예금(기업종합) - 계좌번호: 451-01-1027-715 - 예금주: (재)한국연구재단
원천기술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설은행: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 예금종목: 보통예금 - 계좌번호: 621-910108-60105 - 예금주: (재)한국연구재단
우주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설은행: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 예금종목: 보통예금 - 계좌번호: 621-910024-39204 - 예금주: (재)한국연구재단
원자력연구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잔액 종합관리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설은행: 기업은행 서대전지점 - 계좌번호: 143-025112-01-132 - 예금주: (재)한국연구재단 ○ 국고잔액 종합관리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설은행: 기업은행 서대전지점 - 계좌번호: 143-025112-01-140 - 예금주: (재)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국제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회계 종합관리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설은행: 기업은행 양재동지점 - 계좌번호: 257-072586-04-019 - 예금주: (재)한국연구재단
특구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특구육성(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설은행: 국민은행 대덕특구지점 - 예금종목: 보통예금 - 계좌번호: 468401-04-125960 - 예금주: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추가연구개발특구육성(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설은행: 국민은행 대덕특구지점 - 예금종목: 보통예금 - 계좌번호: 468401-04-144620 - 예금주: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별표 8]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30조제11항 관련)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 (다만, 연구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
 -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장관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제25조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마. 제26조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참여연구원에 대한 직접비(다만, 인건비 및 제24조제3항의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인건비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과제 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실비청산한 경우,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을 갖추지 않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 단,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로 대체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단 참여연구원 1인 과제 제외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질 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5) 연구착수 시점에 연구수당 지급(1개월 이내)한 경우 6) 평가결과는 동일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상이한 경우 7) 평가결과는 상이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동일한 경우 8) 연구수당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
간접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중소중견기업으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및 영리기관이 일괄 흡수하여 지출한 금액

- 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단, 장관의 승인이 필요 없는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 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감액한 금액

2.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범위

- 가.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나.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

[별표 9]

**비영리법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보상금 지급액이 20억 원 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급기준 (제39조제6항 단서 관련)**

1. 보상금의 지급 원칙

- 가. 기술료에서 참여연구원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은 발명신고서 등에 기재된 지분으로 산정하되, 기여율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개별 참여연구원을 평가하여 기여율을 산정한다.

2. 보상금의 지급 기준

개별 참여연구원이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보상금 누적 금액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지급한다.

보상금 누적금액	보상금 지급액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4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3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2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50억원 초과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별표 10]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기준 및 절차(제41조제7항 관련)

1. 등록·기탁의 기준

가. 적용범위

연구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연구성과 중 등록대상 및 기탁대상의 구분

- 1) 등록대상: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및 신제품 중 정보
- 2) 기탁대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화합물 및 신제품 중 실물

다. 등록대상 연구성과의 등록 범위

- 1)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 포함)
- 2)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 3)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단계)보고서 및 연차보고서의 각 전자원문
- 4) 연구시설·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 5) 기술요약정보: 기초·응용·개발단계 등의 최종(단계)보고 및 연차보고가 완료된 결과물의 기술정보를 요약하여 공유·활용(기술이전·사업화 등)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기록정보
- 6)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유전체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질체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정보[유전자(DNA)칩, 단백질칩 등]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 7)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 8) 신제품 중 정보: 생명정보 중 국내 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제품에 관한 정보

라. 기탁대상 연구성과의 기탁 범위

- 1)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사람·동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관련 정보
- 2)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 3) 신제품 중 실물: 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제품 및 관련 정보

마. 연구성과가 복수의 등록 또는 기탁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하는 모든 분야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2. 등록·기탁의 절차

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등록·기탁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한다. 다만, 보고서원문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종료시, 기술요약정보의 경우에는 연차실적 보고 및 연구개발 종료 시 해당 연구성과의 정보를 등록한다.

나. 전담기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에 등록·기탁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이 외에 등록·기탁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0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제45조제1항 관련)

1. 적용기준

- 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호가목1)부터 6)까지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의 사유 중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연구개발 과제에서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 나. 제2호나목의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이전의 참여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참여제한 사유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 다.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제2호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참여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 라. 제2호나목2)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용용도 외의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해당 횟수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줄일 수 있다.

2. 참여제한 기간

- 가. 「과학기술기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제3호·제4호·제4호의2·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1호	3년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3호	3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	2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의2	2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6호	2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8호	2년 이내

- 나.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

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근거법조문	1회	2회	3회 이상
1)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가) 국내로 누설·유출	법 제11조의2 제1항제2호	2년	3년	4년
	나) 해외로 누설·유출		5년	7년 6개월	10년
2)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가)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5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나)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4년 초과 6년 이내	6년 초과 8년 이내
	다)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5년	7년 6개월	10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7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별표 11]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45조제11항 관련)

환수사유		환수기준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6.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별표 11의2]

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제45조의3 관련)

1.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에 따라 산정한다.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5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억7천5백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2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억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50%
10억원 초과	20억2천5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 제한, 출연금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나. <삭제>

다. 출연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라.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제33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지식서비스 분야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경영 전략/ 금융/ 무역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유통/ 물류/ 마케팅 서비스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유통물류응용기술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 시뮬레이션기술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기술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부가 가치/ 사후 관리 서비스	재제조서비스/제품·서비스 시스템(PSS)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전자무역서비스		문화-의료-환경기반 지식표현 /지능형 융합서비스기술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기술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기술
연구 개발/ 엔지니어링 서비스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디자인	기타부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제품디자인기술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성 능향상기술		시각디자인기술
	제품품질 관리기술		디지털디자인기술
	시험/검사/분석기법		패션·텍스타일디자인기술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산업공예 디자인기술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패키징)기 술		서비스디자인기술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 평가/관리기술		공간/환경디자인기술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포장디자인기술		
인적 자원 역량 개발 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UI/UX디자인기술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디자인기반(디자인인프라)기술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기타 디자인기술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별지 제1호서식]

표준 협약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주관연구기관 협약용)

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협약연구개발비 부처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세부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참여 기업		세부연구책임자 대표자	

연구 개발비	(단위: 천 원)				
	구분	정부 출연금	기업 부담금	기타	계
	1차 연도(20XX년)			()	
	2차 연도(20XX년)			()	
	3차 연도(20XX년)			()	
	4차 연도(20XX년)			()	
	5차 연도(20XX년)			()	
계			()		

총 연구 개발 기간	. . . ~		
다년도 협약 기간	. . . ~		
해당 연도 협약 기간	. . . ~		

위 연구 개발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장관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의 협약 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협약 당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	○ ○ ○	직 인
주 관 연 구 기 관	대 표 자	○ ○ ○	직 인
주 관 연 구 책 임 자	성 명	○ ○ ○	(인)
소 속:	직 급 (위):		

첨부서류	1. 연구개발과제계획서(신청용) 및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각 1부, 2.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1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만 해당) 3. 기타 부가 서류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협약의 세부조건>

제1조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신청용) 및 별첨2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연구개발의 수행)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신청용) 및 별첨2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3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지급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본 협약서 제1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장관이 정하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장관의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제의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참여기업 및 그 밖의 자가 부담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동 당사자의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주관

연구기관의 장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주관연구기관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총 매수·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연구개발비를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7.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처리규정 별표3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별표5의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 중 증빙하지 못한 금액, 처리규정 별표3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별표5의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제3항에 따른 항목별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없이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5조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단계)보고서·요약서, 연구성과소개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의 계속과제인 경우 또는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계획서 및 자체평가의견서를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 종료 1개월 전 또는 해당연도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책임자는 처리규정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 전 (단계평가시) 또는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45일 이내(최종평가시)에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와 연구개발성과활용계획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3개

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문서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장관은 보고에 대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계정원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단,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년도협약 과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연도별 연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연구기간 내에 발생한 연구비 사용잔액을 다년도 협약기간 내에서 해당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 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해당액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한 즉시 장관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처리규정에 따른다.

제7조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장관은 연구개발성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이하로 평가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본 협약서 제19조제2항제1호 및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평가결과를 연구원 평가에 반영 조치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성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장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개발보고서 등의 배포) ① <삭제>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장관이 국가보안유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배포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과제 중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성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첨단과학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최초 과제협약 후 30일 이내에 과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한 참여인력, 성과, 장비·기자재 등 연구개발 표준정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① 처리규정에 따라 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물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처리규정 제41조제7항에 따른 별표10의 기준과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및 기술실시계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7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기술실시계약(이하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경우에 실시계약 체결 당시 처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기업 참여과제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대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그 밖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④ 제3항제2호와 제3호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준용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2조 (기술료의 징수)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술료의 사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9조를 준용하여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 (기술료의 납부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 중 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고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처리규정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다음연도의 2월말일 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장관은 필요한 경우 그 사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권역, 등 무형

적 성과는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성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장관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성과를 참여기업, 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성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성과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3.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한 경우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연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자기소유의 무형적 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무형적 성과를 소유한 기관의 장은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해당 무형적 성과를 소유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 (협약의 변경) ① 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의 연구개발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장관은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협약의 해약)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

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1의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이미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처리규정 제17조제1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연구자가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른 참여제한이 확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다른 연구과제에서 참여제한이 확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처리규정 제40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처리규정 제43조제2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의 조치로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1.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장관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장관은 교부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법정관리·폐업·연구기관(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처리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연구비의 집행증지, 현장 실태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에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2년
6.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가. 국내로 누설유출: 2년(1회), 3년(2회), 4년(3회 이상)
 - 나. 해외로 누설유출: 5년(1회), 7년 6개월(2회), 10년(3회 이상)
7.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만, 장관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 가.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1회),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2회),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3회 이상)
 - 나.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1회), 4년 초과 6년 이내(2회), 6년 초과 8년 이내(3회 이상)
 - 다.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1회),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2회),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3회 이상)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 5년(1회), 7년 6개월(2회), 10년(3회 이상)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1회),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2회),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3회 이상)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제20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는 5과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한다. 다만, 처리규정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안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1조 (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① 주관연구기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주관연구기관이 그 외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서에 날인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제1항에 따른 자체검증시스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보안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를 거쳐 연구과제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에 처리규정 제40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매년 10월 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처리규정 제40조 및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연구과제의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연구노트)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노트 지침」 제2조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 (협동연구기관 및 준용규정) ① 본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 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과 해당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을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66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처리규정 제12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세부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 협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본 협약서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6조, 제17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주관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책임자”로 보며, 장관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를 거쳐야 한다.

제25조 (기타 준수사항)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장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장관은 지체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장관에게 환불하거나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별첨2의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의 내용 중 해당연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연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본 협약서 제출 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비를 부정한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⑦ 주관연구기관은 연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 사용 금액의 5배 범위내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과됨을 유념하여야 한다.

⑧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들에게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등 연구비 부정집행 예방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 (해석) 본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처리규정을 준용하며,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장관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장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27조 (부가조건)

년 월 일

[별첨1]

연구개발과제계획서(신청용)

(표지)

① 공고 번호								
② 부처사업명(대)		③보안등급(보안, 일반)						
④ 사업명(중)		⑤공개가능여부 (공개, 비공개)						
⑥ 세부사업명(소)								
과제성격 (기초, 응용, 개발)		실용화 대상여부 (실용화, 비실용화)						
⑦ 총괄(상위) 과제명								
과제명		국 문						
		영 문						
⑧(총괄)주관연구기관		⑨사업자 등록번호						
⑩협동(공동)연구기관								
⑪(총괄)연구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소속부서	전공						
	전화	E-mail						
	휴대전화	팩스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천원, 명)								
년 도	정부출연금 (A)	기업체부담금			정부인출 연금(B)	합계 G=(A+B+E)	상대국 부담금 (F)	참여 연구원수
		현금 (C)	현물 (D)	소계 E=(C+D)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총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다년도협약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⑬ 참여기관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⑬과학기술인 등록번호	
⑭참여기업 수	중소 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		기타	계
⑮국제공동연구	국제공동 연구여부	국가명	상대국 연구기관수	상대국 연구개발비	상대국연구책임자수			
<p>관계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협약 해약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주관연구책임자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주관연구기관장 :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귀 하</p>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① 공고 번호: 해당 전문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전산 등록 또는 접수 시 부여받은 공고번호를 기재
- ② 부처사업명(대)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대분류 사업으로 기재
- ③ 보안 등급: 보안과제란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말하며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 ④ 사업명(중) : 최상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중분류 사업으로 기재
- ⑤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에 “비공개” 기재
- ⑥ 세부사업명(소) : 사업명(중)의 하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상의 소분류 사업으로 기재
- ⑦ 총괄 과제명: 세부 과제를 여러 개 수행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 개념의 과제 명 (해당사항 없을 시 빈 칸)
- ⑧ (총괄)주관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총괄 주관연구기관 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해당 주관연구기관 명을 기재
- ⑨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빈 칸
- ⑩ 협동(공동) 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주관연구기관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 내용 중 일부를 담당하는 연구기관 명을 기재
- ⑪ (총괄) 연구책임자: 총괄 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하고, 단위 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⑫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회원 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 ⑬ 참여기관 :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에 소속된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⑭ 참여기업: 참여기업이나 연구개발성과물을 향후 실시하고자 희망하는 기업명을 기재
- ⑮ 국제공동연구 : 해당 시 ○ 표시

〈 요약 문 〉

① 연구개발 목표	
------------------	--

② 연구개발 내용																																							
③ 연구개발성과	<p><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 유형></p> <table border="1" data-bbox="335 436 1316 622">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논문</th> <th rowspan="2">특허</th> <th rowspan="2">보고서 원문</th> <th rowspan="2">연구 시설· 장비</th> <th rowspan="2">기술 요약 정보</th> <th rowspan="2">소프트 웨어</th> <th rowspan="2">화합물</th> <th colspan="2">생명자원</th> <th colspan="2">신품종</th> </tr> <tr> <th>생명 정보</th> <th>생물 자원</th> <th>정보</th> <th>실물</th> </tr> </thead> <tbody> <tr> <td>예상성과 (N/Y)</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 시설· 장비	기술 요약 정보	소프트 웨어	화합물	생명자원		신품종		생명 정보	생물 자원	정보	실물	예상성과 (N/Y)											
구분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 시설· 장비	기술 요약 정보	소프트 웨어	화합물	생명자원		신품종																													
								생명 정보	생물 자원	정보	실물																												
예상성과 (N/Y)																																							
④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⑤ 국문핵심어 (5개 이내)																																							
⑥ 영문핵심어 (5개 이내)																																							

※ 국문으로 작성(영문핵심어 제외)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p>① 연구 개발 목표: 국문(영문) 연구 개발 목표를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p> <p>② 연구 개발 내용: 국문(영문) 연구 개발 내용을 1,000자(영문 1,000단어) 내외로 작성</p> <p>③ 연구 개발 성과: 국문(영문) 연구 개발 성과를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p> <p>※ 국내외 논문 게재, 학술 발표, 특허 출원·등록, 인력 양성, 기술 이전, 표준화 등 연구 개발 성과를 기재</p> <p>*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 유형(국문): 연구개발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9대 연구성과(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소프트웨어, 생명자원(생명정보, 생물자원), 화합물, 신품종]의 발생 여부(N, Y) 기술</p> <p>④ 활용 계획 및 기대 효과 : 연구성과의 응용 분야 및 활용 범위 등을 포함 하여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p> <p>⑤ 핵심어: 국문(영문) 핵심어 5개 이내로 작성</p>

목 차

1-1. 연구 개발의 개요	
1-2. 연구 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2.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2-2.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3. 연구 개발의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 체계	
4.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4-1.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4-2. 기대 효과	
5. 연구 기관 현황	
5-1. (총괄) 연구책임자	
5-2. 협동공동위탁 연구책임자(해당 시 작성)	
5-3. 기관(기업) 정보 현황	
6. 연구 개발비 명세	
7. 보안 등급의 분류 및 결정 사유	
8.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	

1. 연구 개발의 필요성

- 1-1. 연구 개발의 개요
- 1-2. 연구 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2.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 2-1.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 2-2.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3. 연구 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 국제 공동 연구 추진계획(해당 시 작성)

4.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4-2. 기대효과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연구개발의 필요성: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창의성·혁신성, 연구개발성과 및 평가 방법에 대하여 기술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 가. 추진전략 방법: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 나. 추진체계: 국내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 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 다.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현황: 추진배경, 성공가능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향후 추진일정 등을 기술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가. 활용방안: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 이전 등을 서술
 - 나. 기대효과: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성과를 기술적 측면, 경제·산업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

5. 연구기관 현황

5-1. (총괄)연구책임자

가. 인적 사항

성명	국문		생년월일	YYYY.MM.DD	성별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번호			
	직위		E-mail			
	주소	(우:)				

나. 최종학력사항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 권호 포함)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 기관	비고

라.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실적, 5개 이내로 작성)

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 연도 (발표연도)	역할	비고 (피인용 지수)
논문					
저서					

마.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천원)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yyyy. mm. dd		
		yyyy. mm. dd		
		yyyy. mm. dd		
		yyyy. mm. dd		

가. 인적 사항

성명	국문		생년월일	YYYY.MM.DD	성별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번호			
	직위		E-mail			
	주소	(우:)				

나. 최종학력사항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 권호 포함)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 기관	비고

라.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천원)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yyyy. mm. dd		
		yyyy. mm. dd		
		yyyy. mm. dd		
		yyyy. mm. dd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5-1, 5-2 해당]

가. 인적 사항: 주관연구책임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

나. 최종학력사항: 학위란에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종 학위 논문명은 최종 학위가 학사인 경우 학사 학위 논문 제목, 석사인 경우 석사 학위 논문 제목, 박사인 경우 박사 학위 논문 제목 기재

다. 주요 연구 수행 실적: 대표적 실적을 3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교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 비교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함

라.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 저서, 국내 전문 학술지, 해외 전문 학술지, 대학 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특히, 그 밖에 주요 연구 업적을 5개 이내로 간단히 기재

- 구분은 저서/논문 게재/발표 등으로 구분

마.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연구책임자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연구 책임' 및 '공동 연구' 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기재하고, 참여 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으로 표시

5-3. 기관(기업) 정보 현황 (※ 기업 주관인 과제에 해당 시 기업만 작성)

구분		수행 기관명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대표자 국적				
	대표자 성별				
④	최대 주주 성명				
	최대 주주 국적				
⑤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생산 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 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전		
		20xx년	최근결산 2년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 잠식 현황	자본 총계 (백만 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 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 보상 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 이익 (백만 원)	20xx년			
		20xx년			

* 비영리 기관의 경우 ⑦번~⑮번 항목은 기입 불필요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작성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의 수치를 기준으로 수행 기관(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가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 기재에 따른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부채 비율 = (부채 총계/자본 총계)×100%
- 유동 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자본 잠식 여부: 부분 자본 잠식(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을 경우), 자본 전액 잠식(자본 총계가 -일 경우)
- 이자 보상 비율 = 영업이익/이자 비용

6. 연구개발비 명세

6-1.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A)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B)	현금					
				현물					
	학생 인건비(C)								
	인건비 소계(D=A+B+C)								
	연구장비·재료비(E)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F)								
	연구과제 추진비(G)								
	연구수당(H)								
	위탁연구개발비(I)								
직접비 소계(J=E+F+G+H+I)									
간접비(K)									
연구개발비 총액(L=J+K)									

6-2.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A)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B)	현금					
				현물					
	학생 인건비(C)								
	인건비 소계(D=A+B+C)								
	연구장비·재료비(E)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F)								
	연구과제 추진비(G)								
	연구수당(H)								
	위탁연구개발비(I)								
직접비 소계(J=E+F+G+H+I)									
간접비(K)									
연구개발비 총액(L=J+K)									

7. 보안 등급의 분류 및 결정 사유

보안등급 분류	보안	일반
결정 사유	연구책임자 의견	연구기관 자체 검토결과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비 합계(소계, 총액) 작성 시 미지급(내부/외부)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미지급(내부/외부) 인건비는 연동 비목(연구수당 등) 계산 시에만 포함하여 계산
- 협약 시에는 연차별로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모두 작성
-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분류 및 결정 사유를 서술

8.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

보유 기관	연구 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확보방안	활용도 (필수여부)	시기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보유 기관 칸에는 해당 연구 개발 수행 기관을 포함한 보유 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함
-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에 대하여 기재
 - 확보방안 : 구입 · 임차 등을 구분하여 기재
 - 활용도 및 시기
 - 자체 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상 활용하여야할 장비는 '필수'로 기재
 - 활용 필요 시작 연도를 '○차' 연도로, 전 기간을 활용할 경우는 '전 기간'으로 기재

[별첨2]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에 전문기관이 선정평가결과 통보 시 수정·보완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고,
5-4. 연구개발 참여연구원 현황 및 6. 연구개발비 명세를 추가 작성하여 제출

5-4. 연구개발 참여연구원 현황

번호	소속 기관명	직위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연구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 [B]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건)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성별	취득 연도	학위 (전공)	과제 참여 기간	이 과제 참여율 (%) [A]	전체 참여율 [A+B, %]	
1			YYYY. MM.DD	YYYY		YYYY.MM. ~ YYYY.MM.			
2									
3									
4									
5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소속 기관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예, 주관-○○○, 협동-○○○, 공동-○○○, 위탁-○○○
 - 소속 기관명은 전체 이름을 기재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
 - 성별은 남, 여 중 선택
- 외국인 및 임시직 참여 연구원인 경우,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기재는 선택 사항임
 -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는 '-' 없이 기재
- 과제 참여 기간은 연, 월(YYYY-MM)까지만 기재: 예, 17.08.~18.07.
- 신규 채용 여부는 신규 채용인 경우와 기존인 경우로 표기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 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 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제도(3책 5공) 적용함(이 신청 과제를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임)
 -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총괄책임자 과제 수도 포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 과제는 3책 5공에 포함하지 않음
 - ① 사업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 ② 사전 조사, 기획·평가 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 ③ 총괄·세부 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 과제(세부 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공 기술 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
 - ⑤ 해당 중앙행정기관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 개발 사업
 - ⑥ 위탁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에는 출연연과 특정연의 정부수탁사업 및 기본사업 참여율 포함하여 기재
 - 대학 정규 소속 연구원의 경우, 학생 지도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이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100% 이내에서 기재
 -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의 경우는 참여율 최대 130%까지 계산하여 넣을 수 있음(단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율을 계산하여 넣음)
- ※ 참여 연구원 현황 정보는 선정 평가 시 평가 위원과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누락, 오타 등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

5-4-1.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실적(계획)_해당 기업만 작성

(단위 : 천원)

번호	성명 ¹⁾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신규 채용일 (예정일)	이 과제 참여율(%) ²⁾	월 급여	타 참여과제 정보(참여율 100% 미만 시 작성)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연구책임자 (주관기관)	총연구기간 (총연구비)
1			YYYY. MM.DD	100						
2										

- 1)5-4 총괄표에 작성한 참여연구원 중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인원은 본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직” 에 한하며 해당 인력을 본 표에 재 기재
- 2)참여율 100% 만 인정(단 2명 이상 청년 의무채용으로 신규 고용 후 2과제 이상 수행하여 참여율을 분할한 경우 해당 과제정보 기재)
- 3)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실적 증빙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로 같음하며, 해당 서류를 1차 회계연도 종료일 전까지 전문기관에 제출

5-4-2.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실적(계획)_해당 기업만 작성

(단위 : 천원)

번호	성명 ¹⁾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신규 채용일 (예정일)	이 과제 참여율(%)	월 급여	당초 당해연도 매칭금액(현금)	당해연도 감면 금액
1			YYYY.MM.DD				
2							

- 1)5-4 총괄표에 작성한 참여연구원 중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인원은 본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직” 에 한하며 해당 인력을 본 표에 재 기재
- 2)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실적 증빙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로 같음하며, 해당 서류를 1차 회계연도 종료일 전까지 전문기관에 제출
- 3)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은 중소기업에 한 함

※ 동일인을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표 5-4-1)” 와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표 5-4-2)” 에 중복 기재 불가

6. 연구개발비 명세

6-1. 연도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A)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B)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C)								
	인건비 소계(D=A+B+C)								
	연구장비·재료비(E)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F)								
	연구과제 추진비(G)								
	연구수당(H)								
	위탁연구개발비(I)								
직접비 소계(J=E+F+G+H+I)									
간접비(K)									
연구개발비 총액(L=J+K)									

6-2.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A)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B)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C)								
	인건비 소계(D=A+B+C)								
	연구장비·재료비(E)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F)								
	연구과제 추진비(G)								
	연구수당(H)								
	위탁연구개발비(I)								
직접비 소계(J=E+F+G+H+I)									
간접비(K)									
연구개발비 총액(L=J+K)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비 합계(소계, 총액) 작성 시 미지급(내부/외부)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미지급(내부/외부) 인건비는 연동 비목(연구수당 등) 계산 시에만 포함하여 계산
- 협약 시에는 연차별로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모두 작성

6-3.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 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천원)

구분	기업명	기업 유형	민간 부담액		
			현금	현물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업 유형(택1): 중소기업(중소기업 연구 조합), 중견기업, 대기업(대기업 연구 조합), 기타

6-4. ○차년도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해당 연도만)

가. 직접비: 천원

1) 내부인건비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할 것)

- 구분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을 구분하여 기재
- 내부인건비 중 원 소속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소속 기관의 실지급 인건비에 해당 과제 참여율을 곱하여 계산하여 넣되 해당 연구 개발비에서 지급하지 않음 (미지급 인건비는 표 '지급구분' 칸에 '미지급'으로 기재)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중 정부출연금으로 전액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국책연구기관의 내부인건비는 해당 기관의 실지급액에 참여율을 곱하여 넣음(지급 인건비는 표 지급구분 칸에 '지급'으로 기재)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이 새로운 연구 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산하여 넣을 때에는 이미 수행 중인 연구 개발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하여 넣음
- 지급 여부는 미지급, 지급(현금, 현물) 구분해서 기재

(단위: 천원)

구분	소속 기관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참여율 (%)	실지급액	현금/현물	지급 여부
주관				YYYY. MM.DD	YYYY.M M.DD					
협동										
공동										
위탁										
계										

2) 외부인건비

(단위: 천원)

구분	소속 기관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참여율 (%)	실지급액	현금/현물	지급 여부
주관				YYYY. MM.DD	YYYY.M M.DD					
협동										
공동										
위탁										
계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할 것)

- 구분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구분하여 기재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 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지급 구분은 미지급, 지급(현금, 현물) 구분하여 기재

(단위: 천원)

구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용도)
				현금	현물	계	
연구 시설							
연구 장비							
재료비 (시약재료 및 전산처리· 관리비)							
재료비 (시제, 작품 및 시험설비 제작경비)							
총액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세부내역 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 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품명 규격 등 상세히 기재

5) 연구활동비

(단위: 천원)

내역		단가	횟수 (수량, 건)	금액	비고
여비	국외				
인쇄, 복사,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공고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국외전문가				
교육훈련	국내				
	국외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도입국관련 세부내용			
시험, 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인건비 ×()%			
합계				

6)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천원)

구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연구과제 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식대 (해당 과제 관련)				
총액					

7) 연구수당

(단위: 천원)

구분	산정 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천 원		
합계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할 것)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8) 위탁연구개발비

_____ 천 원

나. 간접비

1) 비영리기관의 경우

_____ 천 원(간접 비율 : %)

2) 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천원, %)

구분	성명	직위	신규채용 구분	실지 금액 (A)	참여율(% (B)	합계(A×B/100)		
						현금	현물	계
인력 지원비 (1)	지원 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연구 지원전문가인건비	홍길동	소장	연구지원 전문가				
소계(C)								

구 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기타 (2)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D)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E)					
	소계(F=D + E)					
	간접비 총액(G=C + F)					천원(간접비율: %)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할 것)

- 신규 채용 구분 여부 항목에는 연구지원전문가에 해당하는 경우 1명만 기재하되, 중소·중견기업에 한해서만 인정되며(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산정), 대기업은 제외됨
-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내 산정(자체 평가 후 결과에 따른 지급)
-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 연구개발비 제외한다.)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산하여 넣음.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 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까지 계산하여 넣을 수 있음

9. 연구실 안전조치의 이행계획

가. 연구실 안전 조치 이행 계획

1) 기술적 위험 요소 분석

--

2) 안전 관리 대책

--

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 (해당 시)

시설 번호	제LML○○ - ○○호	안전 관리 등급	○등급
수입 신고(최근 1년간)		제LMI○○-○○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가. 주관연구기관 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 시 수반될 수 있는 기술적 위험요소 및 위험도를 분석하여 기술하고, 위험도 저감 및 참여연구원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연구실 안전시설·장비 구비, 연구종사자 안전교육,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등) 기재
- 나. 유전자 변형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 확인서 및 시험·연구용 LMO 수입신고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술
(미신고 시설 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첨부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로 처리되는 사항이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 되는 확인란에 표시(Y)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과제 번호		
과제명		
확인 사항	확인	
	예	아니요
<p><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가능 과제 수></p> <p>√ 주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이번 신청 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5개 이내, 이중 연구책임자로 3개 이내 연구 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수행 중인 연구 과제가 없는 경우도 포함)</p> <p>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2항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연구 과제 수에서 제외 (예외 조항 적용 여부는 해당 타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후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무효 처리)</p>		
<p><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제한></p> <p>√ 만일 주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국가 연구지원기관에 의거 하여 연구개발 사업 참여가 제한된 사실이 있다면 이번 신청 과제 접수 마감 1일 전을 기준으로 제한 조치가 완전히 해제됩니까?(해당 사항이 없으면 '예'에 표기하십시오.)</p>		
<p><과제의 중복성></p> <p>√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됩니까?</p>		

	코드번호	B-14-02
<p><재무 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p> <p>①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 기업이 부도 상태인가?</p>		
<p>②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상태 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p>		

확인사항	확인	
	예	아니요
③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가 있는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 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 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 지원 위원회)를 통해 재 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 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 개시일 또는 법인 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 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 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 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 중 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부채비율 1,000% 기준 적용		
⑥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 전액 잠식 상태인가?(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⑦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 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 절" 또는 "부적정"상태인가?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협약의 해약) 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제재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첨부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 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 인력은 ○○○○○ 연구 지원 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서 ○○○○○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 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 정보 보호법」 제18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

① 수집 · 이용 목적

-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제척,기피)대상 확인, 참여 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 참여 수 제한 초과 여부, 기타 선정 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 지원 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 나. 협약의 체결 · 변경 및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 다. 연구 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연구 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 관리
- 라.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참여 제한, 연구 개발비 환수 및 제재 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바. 연구 부정 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 사. 연구성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수집 · 이용하려는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항목

1. 이름(영문이름), 성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연구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 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 등록 실적, 연구 논문 발표 실적, 정부 출연 사업 수행 실적, 현재 수행 중인 정부 출연 사업 전체 참여율,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정보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등
2. 본인은 ○○○○○이 본인의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부터 수집 · 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 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한 과제 수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 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 제12조의4, 제25조, 과세기본법 제81의13제1항제7호 등 관련 법령 및 연구개발 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위의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 · 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 과제 정보

사업명

신청 연도

연구 과제명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인력

구분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속 (법인명·상호)	서명 (직인)
연구책임자		YYYY.MM.DD (000-00-00000)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주관연구기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000-00-00000)		

- ※ '개인 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함
- ※ 이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제출하여야 함

개인 정보 보유 기관장 귀하

<첨부 3>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p>(주관연구기관명 또는 참여기관명)은 ○○○○○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위 사업에 대하여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연구 개발비 중 해당 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출연하고, 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주관연구기관(또는 참여기관) 장:(기관명) (직인)</p> <p style="text-align: right;">0000부 장관 귀하</p>			

<첨부 4>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사업명			
과제명(과제번호)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총 협약기간		연구책임자	
<p>본인은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연구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과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겠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위조/변조/표절 등) 방지 노력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정 숙지 및 준수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2. 「생명윤리법」에 관계된 인간대상연구 수행 시 관련법 준수 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관계된 동물실험연구 수행 시 관련법 준수 4. 이 외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과 규정 등 5. 올바른 연구수행을 위한 교육 참여(참여연구원) 및 지원(연구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지식재산전략원(KISTA) 연구노트 교육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연구윤리 및 연구비 관리 교육 등 <p>또한, 인건비를 비롯한 연구비들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하겠으며 연구개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연구참여제한, 연구비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법 제437조(사기) 및 동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른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년 월 일 </div> <div style="margin-top: 10px;"> 연구책임자 : (서명) 참여연구원 : (서명) </div> <div style="margin-top: 20px; 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주관연구기관(또는 참여기관) 장:(기관명) (직인) </div>			

[별첨3]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지급시기 과제명 (기관명)	1차 (...)	2차 (...)	3차 (...)	...	계
()					
()					
()					
()					
()					
()					
()					
()					
()					
()					
()					
()					
()					
합계					
구성비(%)					

[별지 제2호서식]

표준협약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문기관 협약용)

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협약연구개발비			

부처		전문기관	
----	--	------	--

연구 개발비	(단위: 천 원)				
	구분	정부 출연금	기업 부담금	기타	계
	1차 연도(20XX년)			()	
	2차 연도(20XX년)			()	
	3차 연도(20XX년)			()	
	4차 연도(20XX년)			()	
	5차 연도(20XX년)			()	
계			()		

총연구 개발 기간	. . . ~
다년도 협약 기간	. . . ~
해당 연도 협약 기간	. . . ~

위 연구 개발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의 협약 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협약 당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 ○	직 인
전문기관	원장	○ ○ ○	직 인

첨부서류	1. 연구개발사업명 및 과제명 1부, 2. 전문기관 위탁사업 계획서 3. 연구개발비 집행 계획서
------	---

< 협약의 세부내용 >

제1조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별첨2의 '전문기관 위탁사업계획서'의 붙임 '연구개발과제 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각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이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9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3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9조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서의 별첨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제출시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만을 재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전문기관의 장은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각 주관연구기관과 처리규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 등에 의하여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재지급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비 재지급이 완료된 후 즉시 장관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전문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전문기관의 장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전문기관의 장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한 원장을 비치하고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재지급에 관한 협약서 및 재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총 매수·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전문기관의 장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해당 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검토결과 보고) 전문기관의 장은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내용에 대하여 장관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금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별첨1의 과제에 대하여 처리규정 제 17조제14항의 연차실적계획서 또는 처리규정 제33조의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에 대하여 장관이 따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진도관리 또는 최종(단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내용 및 결과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결과보고) 전문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3조에 따라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의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연구성과 활용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 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실시계약 결과보고) 전문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7조에 따라 별첨1의 연구개발 과제에 대하여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실시계약결과를 종합(동 계약서 사본 1부 첨부)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료 징수금액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8조 (기술료의 징수 사용실적보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연구 개발과제의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기술료징수결과”를 종합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해당연도 “기술료사용실적”을 종합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협약의 변경 등)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해약할 수 있다.

1.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의 협약변경에 대한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에 대하여 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문기관과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체결이 본 사업 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3.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 중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문기관과 해당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 가.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 나.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이미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처리규정 제17조제1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다.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 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 마.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 바.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 사.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

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때

- 아. 연구자가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참여제한이 확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참여제한이 확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자. 처리규정 제40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차. 처리규정 제43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카.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4.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에 대하여 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과제에 대한 정부출연금액을 즉시 장관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③ 전문기관의 장은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기업부설 연구소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법정관리·폐업 등 처리규정 제2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자료 제출 등)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수행관리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법령의 준수) 전문기관의 장은 본 연구개발과제 관리 및 별첨1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그 밖에 준수사항) ①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이 연구수행관리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장관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13조 (해석) 본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처리규정을 준용하며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장관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4조 (부가조건)

년 월 일

[별첨2]

전문기관 위탁사업계획서

I. 사업개요

위탁기관 :

위탁사업명 : 0000 등 개 사업

○ 추진배경

세부사업명	추진배경

○ 추진필요성

세부사업명	추진필요성

○ 연구개발목표

세부사업명	연구개발목표

총연구기간 : 년 ~ 년(년+ 년)

○ 단계연구기간(당해연도) : 20 . ~ 20 . (20 . ~ 20 .)

당해연도 사업비 : 원

II.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

추진일정 :

III. 평가체계 및 내용

1. 사전검토

평가방법

2. 전문가 평가

- 평가일자 및 장소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방법
- 전문가 점수확정 및 순위화

3. 전문기관 평가

- 평가방법
- 연구비 조정
- 종합평가서 작성

4. 연구개발사업추진위원회

- 평가방법

5.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및 재평가

IV. 선정평가 결과

(단위 : 억원)

사업명	RFP 예산	신청현황		선정현황	
		과제수	정부 연구비	과제수	정부 연구비
계					

V. 평가관리

1. 진도관리

- 평가목적
- 평가 근거 및 대상
- 평가 기본방향
- 평가 체계

-
- 평가 주요내용 및 방법
 - 평가결과 반영

2. 단계평가

- 평가목적
- 평가 근거 및 대상
- 평가 기본방향
- 평가 체계
- 평가 주요내용 및 방법
- 평가결과 반영

VI. 기타 관련규정

- 관련규정

[별첨3]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과제명 (기관명) / 지급시기	1차 (...)	2차 (...)	3차 (...)	...	계
()					
()					
()					
()					
()					
()					
()					
()					
()					
()					
()					
()					
()					
합계					
구성비(%)					

<협약의 세부조건>

제1조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신청용) 및 별첨2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연구개발의 수행)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신청용) 및 별첨2의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 출연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3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재지급 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본 협약서 제1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연구개발 재투자 및 그 밖에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참여기업 및 그 밖의 자가 부담키로 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동 당사자의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이를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연구개발 재투자 및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따로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주

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주관연구기관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건수·총매수·총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연구개발비를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7.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처리규정 별표3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별표5의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 연구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 중 증빙하지 못한 금액, 처리규정 별표3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별표5의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제3항에 따른 항목별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없이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5조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단계)보고서·요약서, 연구성과소개서 및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의 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의 계속과제인 경우 또는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계획서 및 자체평가의견서를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 종료 1개월 전 또는 해당연도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책임자는 처리규정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 전(단계평가시) 또는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45일 이내(최종평가시)에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와 연구개발성과활용계획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 ¹⁰⁹주관연구기관의 장은 ²²⁸처리규정 제228조에 따

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에 대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계정원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년도협약 과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연도별 연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연구기간 내에 발생한 연구비 사용잔액을 다년도 협약기간 내에서 해당과제의 차년도 연구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해당액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즉시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 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처리규정에 따른다.

제7조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장관은 연구개발성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이하로 평가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본 협약서 제19조제2항제1호 및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평가결과를 연구원 평가에 반영 조치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성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개발보고서 등의 배포) ① <삭제>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시점까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과제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계속과제인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를 연구종료 1개월 전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국가보안유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배포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 과제 중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성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첨단과학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최초 과제협약 후 30일 이내에 과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한 참여인력, 성과, 장비·기자재 등 연구개발 표준정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성과의 등록·기탁) ① 처리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물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처리규정 제41조제7항에 따른 별표10의 기준과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전담기관에 등록₁ 또는 기탁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및 기술실시계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7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기술실시계약(이하 "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경우에 실시계약 체결 당시 처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기업 참여과제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대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그 밖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④ 제3항제2호와 제3호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준용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2조 (기술료의 징수)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술료의 사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9조를 준용하여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 중 처리규정 제39조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고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처리규정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다음연도의 2월 말일 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그 사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성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성과를 참여기업, 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성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성과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3.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한 경우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처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연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자기소유의 무형적 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무형적 성과를 소유한 기관의 장은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해당 무형적 성과를 소유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 (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의 연구개발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사정,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협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1의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이미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 다만, 처리규정 제17조제1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 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연구자가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른 참여제한이 확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참여제한이 확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처리규정 제40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처리규정 제43조제2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의 조치로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1.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교부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법정관리·폐업·연구기관(연구자)의¹³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상황

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처리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연구비의 집행증지, 현장 실태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관계자료 제출 등)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본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에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2년
6.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가. 국내로 누설유출: 2년(1회), 3년(2회), 4년(3회 이상)
 - 나. 해외로 누설유출: 5년(1회), 7년 6개월(2회), 10년(3회 이상)
7.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만, 장관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 가.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1회),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2회),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3회 이상)
 - 나.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1회), 4년 초과 6년 이내(2회), 6년 초과 8년 이내(3회 이상)
 - 다.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1회),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2회),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3회 이상)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 5년(1회), 7년 6개월(2회), 10년(3회 이상)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1회),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2회),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3회 이상)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제20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한다. 다만, 처리규정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안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1조 (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① 주관연구기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 주관연구기관이 그 외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서에 날인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제1항에 따른 자체검증시스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보안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를 거쳐 연구과제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에 처리규정 제40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매년 10월 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처리규정 제40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연구과제의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연구노트)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노트 지침」 제2조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 (협동연구기관 및 준용규정) ① 본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 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과 해당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을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처리규정 제12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세부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 협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본 협약서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6조, 제17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주관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책임자”로 보며,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를 거쳐야 한다.

제25조 (기타 준수사항)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환불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별첨2의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의 내용 중 해당연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연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본 협약서 제출 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비를 부정한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⑦ 주관연구기관은 연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 사용 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과됨을 유념하여야 한다.

⑧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들에게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등 연구비 부정집행 예방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 (해석) 본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처리규정을 준용하며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27조 (부가조건)

년 월 일

- ① 공고 번호: 해당 전문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전산 등록 또는 접수 시 부여받은 공고번호를 기재
- ② 부처사업명(대)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대분류 사업으로 기재
- ③ 보안 등급: 보안과제란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말하며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 ④ 사업명(중) : 최상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상의 중분류 사업으로 기재
- ⑤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에 “비공개” 기재
- ⑥ 세부사업명(소) : 사업명(중)의 하위 국가연구개발사업명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상의 소분류 사업으로 기재
- ⑦ 총괄 과제명: 세부 과제를 여러 개 수행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 개념의 과제 명 (해당사항 없을 시 빈 칸)
- ⑧ (총괄)주관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총괄 주관연구기관 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해당 주관연구기관 명을 기재
- ⑨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빈 칸
- ⑩ 협동(공동) 연구기관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세부/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는 주관연구기관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 내용 중 일부를 담당하는 연구기관 명을 기재
- ⑪ (총괄) 연구책임자: 총괄 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하고, 단위 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⑫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회원 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 ⑬ 참여기관 :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에 소속된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⑭ 참여기업: 참여기업이나 연구개발성과물을 향후 실시하고자 희망하는 기업명을 기재
- ⑮ 국제공동연구 : 해당 시 ○ 표시

〈 요약 문 〉

① 연구개발 목표	
------------------	--

② 연구개발 내용																																							
③ 연구개발성과	<p><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 유형></p> <table border="1" data-bbox="335 436 1316 622">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논문</th> <th rowspan="2">특허</th> <th rowspan="2">보고서 원문</th> <th rowspan="2">연구 시설· 장비</th> <th rowspan="2">기술 요약 정보</th> <th rowspan="2">소프트 웨어</th> <th rowspan="2">화합물</th> <th colspan="2">생명자원</th> <th colspan="2">신품종</th> </tr> <tr> <th>생명 정보</th> <th>생물 자원</th> <th>정보</th> <th>실물</th> </tr> </thead> <tbody> <tr> <td>예상성과 (N/Y)</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 시설· 장비	기술 요약 정보	소프트 웨어	화합물	생명자원		신품종		생명 정보	생물 자원	정보	실물	예상성과 (N/Y)											
구분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 시설· 장비	기술 요약 정보	소프트 웨어	화합물	생명자원		신품종																													
								생명 정보	생물 자원	정보	실물																												
예상성과 (N/Y)																																							
④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⑤ 국문핵심어 (5개 이내)																																							
⑥ 영문핵심어 (5개 이내)																																							

※ 국문으로 작성(영문핵심어 제외)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할 것)
<p>① 연구 개발 목표: 국문(영문) 연구 개발 목표를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p> <p>② 연구 개발 내용: 국문(영문) 연구 개발 내용을 1,000자(영문 1,000단어) 내외로 작성</p> <p>③ 연구 개발 성과: 국문(영문) 연구 개발 성과를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p> <p>※ 국내외 논문 게재, 학술 발표, 특허 출원·등록, 인력 양성, 기술 이전, 표준화 등 연구 개발 성과를 기재</p> <p>*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 유형(국문): 연구개발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9대 연구성과[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소프트웨어, 생명자원(생명정보, 생물자원), 화합물, 신품종]의 발생 여부(N, Y) 기술</p> <p>④ 활용 계획 및 기대 효과 : 연구성과의 응용 분야 및 활용 범위 등을 포함 하여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p> <p>⑤ 핵심어: 국문(영문) 핵심어 5개 이내로 작성</p>

목 차

1-1. 연구 개발의 개요	
1-2. 연구 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2.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2-2.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3. 연구 개발의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 체계	
4.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4-1.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4-2. 기대 효과	
5. 연구 기관 현황	
5-1. (총괄) 연구책임자	
5-2. 협동공동위탁 연구책임자(해당 시 작성)	
5-3. 기관(기업) 정보 현황	
6. 연구 개발비 명세	
7. 보안 등급의 분류 및 결정 사유	
8.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	

1. 연구 개발의 필요성

- 1-1. 연구 개발의 개요
- 1-2. 연구 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2.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 2-1.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 2-2.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3. 연구 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 국제 공동 연구 추진계획(해당 시 작성)

4.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4-2. 기대효과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연구개발의 필요성: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창의성·혁신성, 연구개발성과 및 평가 방법에 대하여 기술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 가. 추진전략 방법: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 나. 추진체계: 국내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 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 다.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현황: 추진배경, 성공가능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향후 추진일정 등을 기술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가. 활용방안: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 이전 등을 서술
 - 나. 기대효과: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성과를 기술적 측면, 경제·산업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

5. 연구기관 현황

5-1. (총괄)연구책임자

가. 인적 사항

성명	국문		생년월일	YYYY.MM.DD	성별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번호			
	직위		E-mail			
	주소 (우:)					

나. 최종학력사항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 권호 포함)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 기관	비고

라.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실적, 5개 이내로 작성)

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 연도 (발표연도)	역할	비고 (피인용 지수)
논문					
저서					

마.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천원)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yyyy. mm. dd		
		yyyy. mm. dd		
		yyyy. mm. dd		
		yyyy. mm. dd		

5-2. 협동·공동·위탁 연구책임자(해당 시 작성)

가. 인적 사항

성명	국문		생년월일	YYYY.MM.DD	성별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번호			
	직위		E-mail			
	주소	(우:)				

나. 최종학력사항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 권호 포함)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 기관	비고

라.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천원)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yyyy. mm. dd		
		yyyy. mm. dd		
		yyyy. mm. dd		
		yyyy. mm. dd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5-1, 5-2 해당]

가. 인적 사항: 주관연구책임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

나. 최종학력사항: 학위란에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종 학위 논문명은 최종 학위가 학사인 경우 학사 학위 논문 제목, 석사인 경우 석사 학위 논문 제목, 박사인 경우 박사 학위 논문 제목 기재

다. 주요 연구 수행 실적: 대표적 실적을 3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교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 비교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함

라.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 저서, 국내 전문 학술지, 국외 전문 학술지, 대학 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특히, 그 밖에 주요 연구 업적을 5개 이내로 간단히 기재

- 구분은 저서/논문 게재/발표 등으로 구분

마.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연구책임자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연구 책임' 및 '공동 연구' 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기재하고, 참여 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으로 표시

5-3. 기관(기업) 정보 현황 (※ 기업 주관인 과제에 해당 시 기업만 작성)

구분		수행 기관명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대표자 국적				
	대표자 성별				
④	최대 주주 성명				
	최대 주주 국적				
⑤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생산 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 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전		
		20xx년	최근결산 2년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 잠식 현황	자본 총계 (백만 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 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 보상 비율		20xx년	124	가

		20xx년			
⑮	영업 이익 (백만 원)	20xx년			
		20xx년			

* 비영리 기관의 경우 ㉗번~㉛번 항목은 기입 불필요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작성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의 수치를 기준으로 수행 기관(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가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 기재에 따른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부채 비율 = (부채 총계/자본 총계)×100%
- 유동 비율 = (유동 자산/유동부채)×100%
- 자본 잠식 여부: 부분 자본 잠식(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을 경우), 자본 전액 잠식(자본 총계가 -일 경우)
- 이자 보상 비율 = 영업이익/이자 비용

6. 연구개발비 명세

6-1.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A)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B)	현금					
				현물					
	학생 인건비(C)								
	인건비 소계(D=A+B+C)								
	연구장비·재료비(E)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F)								
	연구과제 추진비(G)								
	연구수당(H)								
	위탁연구개발비(I)								
직접비 소계(J=E+F+G+H+I)									
간접비(K)									
연구개발비 총액(L=J+K)									

6-2.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A)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B)	현금					
				현물					
	학생 인건비(C)								
	인건비 소계(D=A+B+C)								
	연구장비·재료비(E)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F)								
	연구과제 추진비(G)								
	연구수당(H)								
	위탁연구개발비(I)								
직접비 소계(J=E+F+G+H+I)									
간접비(K)									
연구개발비 총액(L=J+K)									

7. 보안 등급의 분류 및 결정 사유

보안등급 분류	보안	일반
결정 사유	연구책임자 의견	연구기관 자체 검토결과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비 합계(소계, 총액) 작성 시 미지급(내부/외부)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미지급(내부/외부) 인건비는 연동 비목(연구수당 등) 계산 시에만 포함하여 계산
- 협약 시에는 연차별로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모두 작성
-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분류 및 결정 사유를 서술

8.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

보유 기관	연구 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확보방안	활용도 (필수여부)	시기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할 것)

- 보유 기관 칸에는 해당 연구 개발 수행 기관을 포함한 보유 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함
-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에 대하여 기재
 - 확보방안 : 구입 · 임차 등을 구분하여 기재
 - 활용도 및 시기
 - 자체 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상 활용하여야할 장비는 '필수'로 기재
 - 활용 필요 시작 연도를 '○차' 연도로, 전 기간을 활용할 경우는 '전 기간'으로 기재

[별첨2]

연구개발과제계획서(협약용)

※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에 전문기관이 선정평가결과 통보 시 수정·보완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고,
5-4. 연구개발 참여연구원 현황 및 6. 연구개발비 명세를 추가 작성하여 제출

5-4. 연구개발 참여연구원 현황

번호	소속 기관명	직위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연구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 [B]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건)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성별	취득 연도	학위 (전공)	과제 참여 기간	이 과제 참여율 (%) [A]	전체 참여율 [A+B, %]	
1			YYYY. MM.DD	YYYY		YYYY.MM. ~ YYYY.MM.			
2									
3									
4									
5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소속 기관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예, 주관-○○○, 협동-○○○, 공동-○○○, 위탁-○○○
 - 소속 기관명은 전체 이름을 기재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
 - 성별은 남, 여 중 선택
- 외국인 및 임시직 참여 연구원인 경우,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기재는 선택 사항임
 -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는 '-' 없이 기재
- 과제 참여 기간은 연, 월(YYYY-MM)까지만 기재: 예, 17.08.~18.07.
- 신규 채용 여부는 신규 채용인 경우와 기존인 경우로 표기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 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 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제도(3책 5공) 적용함(이 신청 과제를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임)
 -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총괄책임자 과제 수도 포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 과제는 3책 5공에 포함하지 않음
 - ① 사업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 ② 사전 조사, 기획·평가 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 ③ 총괄-세부 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 과제(세부 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공 기술 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
 - ⑤ 해당 중앙행정기관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 개발 사업
 - ⑥ 위탁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에는 출연연과 특정연의 정부수탁사업 및 기본사업 참여율 포함하여 기재
 - 대학 정규 소속 연구원의 경우, 학생 지도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이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100% 이내에서 기재
 -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의 경우는 참여율 최대 130%까지 계산하여 넣을 수 있음(단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율을 계산하여 넣음)
- ※ 참여 연구원 현황 정보는 선정 평가 시 평가 위원과의 이해 관계를 배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누락, 오타 등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

5-4-1.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실적(계획)_해당 기업만 작성

(단위 : 천원)

번호	성명 ¹⁾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신규 채용일 (예정일)	이 과제 참여율(%) ²⁾	월 급여	타 참여과제 정보(참여율 100% 미만 시 작성)				
						부처명	사업명	과제명	연구책임자 (주관기관)	총연구기간 (총연구비)
1			YYYY. MM.DD	100						
2										

- 1) 5-4 총괄표에 작성한 참여연구원 중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인원은 본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직” 에 한하며 해당 인력을 본 표에 재 기재
- 2) 참여율 100% 만 인정(단 2명 이상 청년 의무채용으로 신규 고용 후 2과제 이상 수행하여 참여율을 분할한 경우 해당 과제정보 기재)
- 3)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실적 증빙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로 같음하며, 해당 서류를 차년도 연차협약 시(종료연도의 경우 최종보고서 제출 시) 전문기관에 제출

5-4-2.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실적(계획)_해당 기업만 작성

(단위 : 천원)

번호	성명 ¹⁾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신규 채용일 (예정일)	이 과제 참여율(%)	월 급여	당초 당해연도 매칭금액(천원)	당해연도 감면 금액
1			YYYY.MM.DD				
2							

- 1) 5-4 총괄표에 작성한 참여연구원 중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인원은 본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직” 에 한하며 해당 인력을 본 표에 재 기재
- 2)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실적 증빙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로 같음하며, 해당 서류를 차년도 연차협약 시(종료연도의 경우 최종보고서 제출 시) 전문기관에 제출
- 3)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은 중소기업에 한 함

※ 동일인을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표 5-4-1)” 와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표 5-4-2)” 에 중복 기재 불가

6. 연구개발비 명세

6-1. 연도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A)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B)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C)								
	인건비 소계(D=A+B+C)								
	연구장비·재료비(E)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F)								
	연구과제 추진비(G)								
	연구수당(H)								
	위탁연구개발비(I)								
직접비 소계(J=E+F+G+H+I)									
간접비(K)									
연구개발비 총액(L=J+K)									

6-2.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A)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B)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C)								
	인건비 소계(D=A+B+C)								
	연구장비·재료비(E)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F)								
	연구과제 추진비(G)								
	연구수당(H)								
	위탁연구개발비(I)								
직접비 소계(J=E+F+G+H+I)									
간접비(K)									
연구개발비 총액(L=J+K)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비 합계(소계, 총액) 작성 시 미지급(내부/외부)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미지급(내부/외부) 인건비는 연동 비목(연구수당 등) 계산 시에만 포함하여 계산
- 협약 시에는 연차별로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모두 작성

6-3.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 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천원)

구분	기업명	기업 유형	민간 부담액		
			현금	현물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업 유형(택1): 중소기업(중소기업 연구 조합), 중견기업, 대기업(대기업 연구 조합), 기타

6-4. ○차년도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해당 연도만)

가. 직접비: 천원

1) 내부인건비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할 것)

- 구분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을 구분하여 기재
- 내부인건비 중 원 소속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소속 기관의 실지급 인건비에 해당 과제 참여율을 곱하여 계산하여 넣되 해당 연구 개발비에서 지급하지 않음 (미지급 인건비는 표 '지급구분' 칸에 '미지급'으로 기재)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중 정부출연금으로 전액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국책연구기관의 내부인건비는 해당 기관의 실지급액에 참여율을 곱하여 넣음(지급 인건비는 표 지급구분 칸에 '지급'으로 기재)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이 새로운 연구 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산하여 넣을 때에는 이미 수행 중인 연구 개발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하여 넣음
- 지급 여부는 미지급, 지급(현금, 현물) 구분해서 기재

(단위: 천원)

구분	소속 기관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참여율 (%)	실지급액	현금/현물	지급 여부
주관				YYYY. MM.DD	YYYY.M M.DD					
협동										
공동										
위탁										
계										

2) 외부인건비

(단위: 천원)

구분	소속 기관명	성명	직위 (직급)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참여율 (%)	실지급액	현금/현물	지급 여부
주관				YYYY. MM.DD	YYYY.M M.DD					
협동										
공동										
위탁										
계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할 것)

- 구분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구분하여 기재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 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지급 구분은 미지급, 지급(현금, 현물) 구분하여 기재

(단위: 천원)

구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용도)
				현금	현물	계	
연구 시설							
연구 장비							
재료비 (시약재료 및 전산처리· 관리비)							
재료비 (시제, 작품 및 시험설비 제작경비)							
총액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세부내역 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 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품명 규격 등 상세히 기재

5) 연구활동비

(단위: 천원)

내역		단가	횟수 (수량, 건)	금액	비고
여비	국외				
인쇄, 복사,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공고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국외전문가				
교육훈련	국내				
	국외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도입국 관련 세부내용			
시험, 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인건비 ×()%			
합계				

6)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천원)

구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연구과제 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식대 (해당 과제 관련)				
총액					

7) 연구수당

(단위: 천원)

구분	산정 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천 원		
합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8) 위탁연구개발비

_____ 천 원

나. 간접비

1) 비영리기관의 경우

_____ 천 원(간접 비율 : %)

2) 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천원, %)

구분	성명	직위	신규채용 구분	실지 금액 (A)	참여율(% (B)	합계(A×B/100)		
						현금	현물	계
인력 지원비 (1)	지원 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연구 지원전문가인건비	홍길동	소장	연구지원 전문가				
소계(C)								

구 분		내역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기타 (2)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D)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E)					
	소계(F=D + E)					
	간접비 총액(G=C + F)					천원(간접비율: %)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할 것)

- 신규 채용 구분 여부 항목에는 연구지원전문가에 해당하는 경우 1명만 기재하되, 중소·중견기업에 한해서만 인정되며(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산정), 대기업은 제외됨
-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내 산정(자체 평가 후 결과에 따른 지급)
-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 연구개발비 제외한다.)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산하여 넣음.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 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까지 계산하여 넣을 수 있음

9. 연구실 안전조치의 이행계획

가. 연구실 안전 조치 이행 계획

1) 기술적 위험 요소 분석

--

2) 안전 관리 대책

--

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 (해당 시)

시설 번호	제LML○○ - ○○호	안전 관리 등급	○등급
수입 신고(최근 1년간)		제LMI○○-○○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가. 주관연구기관 책임자가 연구과제 수행 시 수반될 수 있는 기술적 위험요소 및 위험도를 분석하여 기술하고, 위험도 저감 및 참여연구원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연구실 안전시설·장비 구비, 연구종사자 안전교육,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등) 기재
- 나. 유전자 변형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 확인서 및 시험·연구용 LMO 수입신고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술
(미신고 시설 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첨부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로 처리되는 사항이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 되는 확인란에 표시(Y)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과제 번호		
과제명		
확인 사항	확인	
	예	아니요
<p><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기능 과제 수></p> <p>√ 주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이번 신청 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5개 이내, 이중 연구책임자로 3개 이내 연구 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수행 중인 연구 과제가 없는 경우도 포함)</p> <p>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2항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연구 과제 수에서 제외 (예외 조항 적용 여부는 해당 타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후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무효 처리)</p>		
<p><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제한></p> <p>√ 만일 주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국가 연구지원기관에 의거 하여 연구개발 사업 참여가 제한된 사실이 있다면 이번 신청 과제 접수 마감 1일 전을 기준으로 제한 조치가 완전히 해제됩니까?(해당 사항이 없으면 '예'에 표기하십시오.)</p>		
<p><과제의 중복성></p> <p>√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됩니까?</p>		

	코드번호	B-14-02
<p><재무 불안정 및 부실 위험 여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p> <p>①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 기업이 부도 상태인가?</p>		
<p>②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상태 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p>		

확인사항	확인	
	예	아니요
③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가 있는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 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 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 지원 위원회)를 통해 재 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 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 개시일 또는 법인 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 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 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 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 중 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부채비율 1,000% 기준 적용		
⑥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 전액 잠식 상태인가?(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⑦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 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 절” 또는 “부적정”상태인가?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협약의 해약) 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제재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첨부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 인력은 ○○○○○ 연구 지원 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서 ○○○○○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 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 정보 보호법」 제18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

① 수집·이용 목적

-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제척,기피)대상 확인, 참여 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 참여 수 제한 초과 여부, 기타 선정 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 지원 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 다. 연구 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연구 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 관리
- 라.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참여 제한, 연구 개발비 환수 및 제재 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바. 연구 부정 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 사. 연구성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항목

1. 이름(영문이름), 성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연구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 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 실적, 연구 논문 발표 실적, 정부 출연 사업 수행 실적, 현재 수행 중인 정부 출연 사업 전체 참여율,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정보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등
2. 본인은 ○○○○○이 본인의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 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한 과제 수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 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 제12조의4, 제25조, 과세기본법 제81의13제1항제7호 등 관련 법령 및 연구개발 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위의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 과제 정보

사업명

신청 연도

연구 과제명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인력

구분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속 (법인명·상호)	서명 (직인)
연구책임자		YYYY.MM.DD (000-00-00000)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주관연구기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000-00-00000)		

- ※ '개인 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함
- ※ 이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제출하여야 함

개인 정보 보유 기관장 귀하

<첨부 3>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p>(주관연구기관명 또는 참여기관명)은 ○○○○○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위 사업에 대하여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연구 개발비 중 해당 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출연하고, 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주관연구기관(또는 참여기관) 장:(기관명) (직인)</p> <p style="text-align: right;">0000부 장관 귀하</p>			

<첨부 4>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사업명			
과제명(과제번호)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총 협약기간		연구책임자	
<p>본인은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연구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과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겠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위조/변조/표절 등) 방지 노력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정 숙지 및 준수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2. 「생명윤리법」에 관계된 인간대상연구 수행 시 관련법 준수 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관계된 동물실험연구 수행 시 관련법 준수 4. 이 외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과 규정 등 5. 올바른 연구수행을 위한 교육 참여(참여연구원) 및 지원(연구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지식재산전략원(KISTA) 연구노트 교육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연구윤리 및 연구비 관리 교육 등 <p>또한, 인건비를 비롯한 연구비들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하겠으며 연구개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연구참여제한, 연구비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법 제437조(사기) 및 동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른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p>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		
참여연구원 :	(서명)		
주관연구기관(또는 참여기관) 장:(기관명)	(직인)		

[별첨3]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과제명 (기관명) / 지급시기	1차 (...)	2차 (...)	3차 (...)	...	계
()					
()					
()					
()					
()					
()					
()					
()					
()					
()					
()					
()					
()					
()					
합계					
구성비(%)					

[별지 제4호서식]

간접비 및 발생이자 사용실적 보고서

- 연구기관명 :
 보고기간 : 20 . 1. 1. ~ 20 .12.31.
 총괄 현황

(단위 : 원)

비목	구분	전년도 이월금액 (A)	해당년도 수입(B)		해당 연도 발생이자 (C)	계 (D=A+B+C)	사용금액 (E)	차기 연도 이월금액 (F=E-D)	비 고 (비고 등)
			과제수	금 액					
기초연구 사업	소 계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비				-				
	성과활용지원비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특정연구 개발사업	소 계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비				-				
	성과활용지원비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우주개발 사업	소 계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비				-				
	성과활용지원비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핵융합 에너지 연구개발 사업	소 계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비				-				
	성과활용지원비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	소 계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비				-				
	성과활용지원비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특구육성 사업	소 계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비				-				
	성과활용지원비				-				
	발생이자연구과제화								
합계									

주 1) 상기 재원은 결산보고서 등 기관의 객관적인 문서를 통해 즉시 검증이 가능하여야 하며, 각 사용내역을 첨부해야 함
 2) 전년도 이월금액에는 전년도 발생 이자분을 포함함

상기 간접비 및 발생이자 사용실적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보고합니다.

20

연구기관장 : (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전문기관명) 이사장 귀하

정산결과보고서

과제현황

과제명			
연구기관(책임자)		연구비	천원

연구비 집행내역

(단위: 원)

비목	구분	예산(A)				사용금액 (B)	증 감 (A-B)	증감 사유	차년도 이월액
		전년도 이월액	해당연도 협약예산	연구기간중 발생이자	계				
직접비									
· 인건비 · 학생인건비 · 연구장비·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수당 ·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합계									

연구비 정산내역

1. 집행잔액 반납내역

(단위: 원)

집행잔액		발생이자		반납금액(A+B)	반납일자
사용잔액		기간중			
정산잔액		기간후			
소계		소계			
정부지분액(A)		정부지분액(B)			

2. 비목별 정산내역

(단위: 원)

비 목	부적정 집행내역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지분	비고
직 접 비				
· 인건비 · 학생인건비 · 연구장비·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수당 ·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합 계				

□ 종합의견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세부비목별 내역서

1. 직접비

1) 인건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1) 지급처에는 성명, 사용목적에는 타 연구사업 참여현황 기재

주2) 참여연구원 건강보험 가입 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2) 학생인건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1) 지급처에는 성명, 사용목적에는 타 연구사업 참여현황 기재

주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통 항목 기재 면제

3) 연구장비·재료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기자재·시설비, 재료비(분석료, 전산처리비 등 포함), 시약품 등 제작비로 구분하여 기재

4) 연구활동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여비, 유인물비, 공공요금, 수수료, 전문가활용비, 기술(또는 특허)정보조사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회의·세미나 개최비(또는 참가비), 원고료, 기술도입비, 식대 및 세부과제관리비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5) 연구과제추진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150		가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비, 회의비, 식대 등 구분하여 기재

6) 연구수당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보상금, 장려금 기재

7) 위탁연구개발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2. 간접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 입금내역서

기관명		지원연도	
사업명			
세부사업명			

과제명 (연구책임자)	과제유형	입금내역(단위: 원)						
		사용잔액	부당집행액			이자	기타	합계
			자체정산	전문기관 정산	기타정산			
					()		()	
합계								

1. "기타정산" 또는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금액 아래 ()안에 설명(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산금)
2. 세부사업명은 하위 사업명 기재(예: 우수연구센터, NRL)
3. 과제유형은 "주관, 세부, 위탁" 중 해당사항 기재(예: 우수연구센터육성사업의 경우 "주관")
4. 입금내역
 - 사용잔액: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기간 종료 후 연구비 사용잔액으로 정부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부당집행액: 연구비 집행실적 보고에 대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정산 또는 전문기관 정산 등에 의해 부당집행분으로 확정된 금액
 - 이자: 발생이자를 재투자하지 않고 반납하는 금액

◎ 입금담당 연락처 : 성명() 연락처() 입금일자()

입금증(첨부)

[별지 제8호서식]

과제별 집행잔액 입금 및 출금 현황 보고서

1. 과제별 집행잔액 입금 현황 보고서

(단위 : 원)

일자	기관명	협약 년도	사업 구분	과제명	입금현황				비고
					사용잔액	정산잔액	이자등	계	
합계									

※ 붙임 : 은행발행 잔고증명서 1부

【 작성요령 】

1. 사업명 : 연구개발사업의 세부사업명 기재(예 : 우수연구센터육성사업 등)
2. 비고란은 연구기관의 사용잔액 등 입금 시 통보한 이체 공문번호 및 일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정산잔액 확정통보 공문번호 및 일자 기재
3. 그 밖에 작성요령은 별지 제7호 서식(종합관리계좌 입금내역서) 작성요령과 동일함

2. 과제별 집행잔액 출금 현황 보고서

(단위 : 원)

입금 일자	출금 일자	기관명	협약 년도	사업명	세부 사업명	과제명	연구 책임자	금액	비고
합계									

[별지 제9호서식]

연구개발사업비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 운용내역서

1.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수 입	지 출	잔 액
이 월 액			
당해기간중 발생액			
총 계			

2. 수 입

(단위 : 원)

일자	협약연도	기관명	사업구분	과제명 (연구책임자)	입금현황				비고
					사용잔액	정산잔액	이자	계	
계									

3. 지 출

(단위 : 원)

일자	이체기관	연구기간	사업구분	과제명	기관명	연구책임자	지출액	근거
								지출관련 공문서번호
계								

첨부 : 은행발행 잔고증명서 1부.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

1. 연구성과 및 활용 현황

※ **연구성과**는 최종보고서 작성 시 각 전문기관 연구관리시스템(ex.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http://ernd.nrf.re.kr>)에 입력했던 내용 중에서 해당 항목을 내려 받아 그대로 붙이거나 글자 크기 등을 편집하여 첨부함
 ※ accepted/in press인 논문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작성가능

가. 과학기술/학술적 연구성과

(단위: 건)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초청 강연 실적	학술대회 논문발표		지식재산권				수상 실적	출판실적	
국내논문		국외논문			국내	국외	출원		등록			차역서	보고서
SCI	비SCI	SCI	비SCI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나.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성과 정보

과제 번호	게재연월	논문제목	총저자명	출처	학술지명	권(호)	학술지 구분	SCI 여부	IF	국립공동연구 논문여부	기여도

다. 지식재산권 성과 정보

과제 번호	출원등록 연월	재산권 구분	출원등록 구분	발명제목	출원 등록인	출원 등록국	발명지명	출원등록번호	활용형태	기여도

라. 산업지원 및 연구성과 활용

(단위: 건)

기술확산			연구성과활용(사업화 및 후속연구과제 등)		
기술실시계약체결	기술지도	기술평가	후속연구추진	사업화추진중	사업화완료

마. 국내외 기술료 징수 현황 (기업화 완료 또는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기재)

징수 조건	
징수 현황	백만 원(전년도말 현재)

바. 기업화 성과 (기업화 완료 또는 추진 중인 경우 반드시 기재)

업 체 명		기업화 완료[] 기업화 예정[]	년 월 일
계 품 명		계 품 용 도	
기업화이용유형 중 택일	신제품개발[], 기존제품 개선[], 신공정개발[], 기존공정개선[], 기타[]		

사. 경제적 파급 효과 (지난 1년간 실적)

수입대체 효과 (백만 원/년)	수출증대 효과 (백만 원/년)	매출증대 효과 (백만 원/년)	생산성향상 효과 (백만 원/년)	고용창출 효과 (인력양성 인원수)	그 밖의 효과

아. 향후 경제적 기대 효과

수입대체 효과 (백만 원/년)	수출증대 효과 (백만 원/년)	매출증대 효과 (백만 원/년)	생산성향상 효과 (백만 원/년)	고용창출 효과 (인력양성 인원수)	그 밖의 효과

2. 연구개발성과 활용 계획 (해당항목에 "O" 표시)

기술이전	기업화	후속연구 추진	타 사업 활용	그 밖의 목적 활용	연구결과 활용 중단

가. 당해연도 활용계획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나. 활용방법

다. 차년도 이후 활용계획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3. 기대효과

- ※ 향후 연구개발성과 활용에 따른 기술적,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정량적, 정성적)를 전문가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작성
 - 예상매출액(단위: 백만 원), 수입대체효과(단위: 백만 원), 수출증대효과(단위: 백만 원), 원가절감(단위: 백만 원, 기존대비%), 에너지절감효과(단위: 백만 원, 기존대비%), 생산성 향상(단위: 백만 원, 기존대비%) 인력양성 또는 고용창출효과(단위: 명), 투자유치실적((단위: 백만 원), 인프라구축 효과 등

4. 문제점 및 건의사항

- ※ 연구성과의 제고를 위한 제도·규정 및 연구관리 등의 개선점

[별지 제13호 서식]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계		
기술실시계약 현황	실시계약명						
	실시계약일			실시 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출원등록) 인 경우	명 칭			일 자		
		번호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평가 활용여부	기술 가치 평가	평가기관			기간		
		평가결과			평가방법		
	약식 기술 평가	평가기관			약식기술평가 종류		
		평가결과			기간		
기 술 료	청약기술료		경상기술료			기타 조건	
	징수예정일	징수 금액	징수 조건				
			징수 기간				
			최저기술료				
계		최대기술료					
기타특기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붙임 :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1부.

년 월 일

[양식 해설]

■ 개요

“기술실시계약 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기술실시기관과 체결한 기술실시계약을 전문기관에 보고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 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실시계약명 : 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기술가치평가 : 수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 약식기술평가 : 수행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예) KISTI StarValue, 발명진흥회의 SMART3, 특허정보원 K-PEG, 기술보증기금 기술성평가·기술사업타당성평가, 기타 기술가치평가·기술성 평가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 정액기술료 : 선급(계약금) 및 정액기술료로 계약서에 절대금액으로 정해진 기술료 기재
- 경상기술료 : 매출액 또는 판매이익 등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계산하여 지불하는 기술료로 계약서에 정해진 징수조건과 징수기간 기재
- 최저기술료 : 경상기술료의 조건과 관계없이 경상기술료의 최저한도를 정한 기술료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기재
- 최대기술료 : 경상기술료의 조건과 관계없이 경상기술료의 최대한도를 정한 기술료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붙임1)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1. 활용범위 및 내용

2.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3. 활용 추진방법 및 일정계획

4. 활용 관련 지식재산권 목록

가. 특허

발명 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발명자

나.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자	개발자

다. 노하우

라. 발생품 및 시작품

마. 기타 연구보고서 등 활용되는 기술자료

자료명	주요 내용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료 납부 계획서”는 영리법인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할 경우 기술실시 계약 체결을 대신하여 기술료 납부계획을 전문기관에 보고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 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성과활용명 : 기업화에 활용코자 하는 기술 명칭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직접실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으로 기재
- 기술료산정내역 : 기술료의 산출근거 및 산출식 기재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작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기술료 감면승인을 받은 경우 감면 내용, 감면승인 공문 번호 및 일자 기재
- 정액기술료 : 선급 및 정액기술료로 절대금액으로 정해진 기술료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별지 제15호 서식]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보고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계		
기술실시계약 현황	실시계약명						
	실시계약일			실시 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출원/등록) 인 경우	명 칭				일 자	
		번호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료 징수 및 납부 현황	징수 기술료			전문기관 납부기술료			
	구 분	징수일	징수 금액	구 분	납부일	납부금액	
	기 징수				기 납부		
		소 계			소 계		
금회 징수			금회 납부				
계			계				
<p>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납부결과를 보고합니다.</p> <p>붙임 : 전문기관 납부기술료 입금증 사본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료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기술실시기관으로 부터 징수한 기술료와 전문기관 납부결과를 전문기관에 보고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 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실시계약명 : 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직접실시 경우는 “연구성과 활용명”으로 변경하여 사용)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별지 제16호 서식]

기술료 사용 실적보고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계		
기술실시계약 현황	실시계약명						
	실시계약일			실시 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출원·등록) 인 경우	명 칭			일 자		
	실시기관	번호			기관유형		
		기관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e-mail			
부서(담당자)							
징수 기술료	구 분	징수년도	징수금액	사용금액	잔 액		
	지난년도 징수						
		소 계					
	당해년도 징수						
	계						
당해년도 징수 기술료 사용실적	구 분			사 용 금 액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보상금						
	- 연구개발 재투자						
	- 기관운영경비						
	- 개발기술 이전 및 사업화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 비용						
	- 기술확산 기여직원 보상금						
	- 전문기관 납부액(과학기술인공제회 포함)						
	- 기타()						
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기술실시기관으로 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연간 사용실적을 다음년도 2월말까지 전문기관에 보고할 때 사용하며, 당해년도 사용금액이 없더라도 제출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 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실시계약명 : 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직접실시 경우는 “연구성과 활용명”으로 변경하여 사용)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별지 제17호 서식]

기술료 감면 신청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계		
성과활용현황	성과활용명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직접 실시		
	* 지재권이 출원(등록)인 경우	명 칭				일 자	
		번 호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료 감면	감면근거						
	감면사유 및 내용						
	감면금액 산출내역						
<p>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붙임 1. 연구개발과제 개요 1부. 2. 연구계획서 또는 연구결과보고서 등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료감면 신청서”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기술료 감면을 전문기관에 신청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 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연구성과활용명 : 연구성과 중 활용하고자 하는 기술의 연구성과활용명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직접실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 감면근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 제7항의 각호 중 해당조항 기재
- 감면사유 및 내용 : 감면 사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 제7항 각호에 해당되어야 하며 내용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기재

<작성 예시>

동 건은 주관연구기관(○○○○)이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21세기프론티어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의 상기 연구결과물을 직접실시함에 있어 실시기관이 중소기업인 점과 이전기술이 연구개발성과의 일부(35%)인 점을 고려하여 기술료를 아래와 같이 감면하고자 신청함

- 감면금액 산출내역 : 기술료 감면금액의 산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

<작성 예시>

기술료산정기준 (정부출연금 이장) (A)	1차 감면 조정액 (중소기업 적용) (B)=(A)×10%	2차 감면 조정액 (일부기술 적용) (C)=(B)×35%	주관연구기관 조정금액(안)
1,000,000천원	100,000천원	35,000천원	35,000천원

<해당기술이 당해연구과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계량화 작성 예시>

년도	연구개발 목표	연구내용	정부출연금(천원)	비중(%)	해당여부
1차년도 (2008)	○○○연구	○○○○개발	150,000	15	
		◇◇◇◇연구	100,000	10	○
		◎◎◎◎시험	50,000	5	
		소 계	300,000	30	
2차년도 (2009)	△△△연구	○○○○개발	150,000	15	
		◇◇◇◇연구	150,000	15	○
		◎◎◎◎시험	100,000	10	
		소 계	400,000	40	
3차년도 (2010)	□□□연구	○○○○개발	150,000	15	
		◇◇◇◇연구	100,000	10	○
		◎◎◎◎시험	50,000	5	
		소 계	300,000	30	
계			1,000,000	100	
이전기술 관련 연구비 및 비중			350,000	35	

핵물질사용 계획서

1. 과제 제목(과제책임자) :

2. 핵물질 사용계획(사용 미사용) * 사용시 아래 항목을 작성

3. IAEA 신고 여부 (예 아니요) *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6번부터 작성

4. 핵물질 수입계획 (있는 경우 수출국 및 수입 핵물질 양)

5. IAEA MBA(물질수지구역 : Material Balance Area) code

순번	IAEA MBA code	비고

6. 예상 취급 핵물질

IAEA MBA code	종류(핵종)	예상 취급량	예상핵물질 사용기간	예상 핵물질 공급처/국가	예상 핵물질 반입일시

7. 핵물질 사용 연구시설

- 소재지 :
- 핵물질 사용 장소 :

8. 핵물질 계량관리 보고체계 (반입, 반출, 손실 등)

000연구개발사업 협약변경 신청서

대상과제 개요	사업명				과제번호			
	과제구분	<input type="checkbox"/> 총괄과제 <input type="checkbox"/> 세부과제 <input type="checkbox"/> 단위과제						
	세부(단위)과제명							
	(총괄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총괄기관)				(총괄책임자)			
	당해연도 연구기간				참여기업			
	당해연도 연구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계	천원	
변경항목	<input type="checkbox"/> 연구기관 변경 <input type="checkbox"/> 연구책임자 변경 <input type="checkbox"/> 참여기업 변경 <input type="checkbox"/> 연구기간 변경 <input type="checkbox"/> 연구원 변경 <input type="checkbox"/> 연구내용 변경 <input type="checkbox"/> 연구개발비 변경 <input type="checkbox"/> 기타 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위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연구를 수행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역 및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 붙임 : 1. 변경사유(의견)서 및 과제현황(공통)
 2. 변경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포기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변경시)
 3. 변경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동의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 변경시)
 4. 참여기업 동의서(연구기관/연구책임자/타 참여기업 변경시)
 5. 변경후 연구책임자 현황(연구책임자 변경시)
 6. 변경후 참여기업 현황(참여기업 변경시)
 7. 연구비 변경 현황(연구비 변경시)
 8. 연구장비 활용 및 이전에 관한 합의서(연구기관 변경시)

20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_____ (인)

주관연구기관 : _____ (직인)

연구성과 소개서

지원과제 정보		
사업명		
과제명		
연구자 / 소속기관		
핵심성과 정보		
성과유형	<input type="checkbox"/> 이론 <input type="checkbox"/> 방법/기법 <input type="checkbox"/> 알고리즘 <input type="checkbox"/> 소재/물질 <input type="checkbox"/> 종자 <input type="checkbox"/> 기술/공정 <input type="checkbox"/> SW <input type="checkbox"/> Data <input type="checkbox"/> 표준/규제 <input type="checkbox"/> 기타 ()	
근거성과	<input type="checkbox"/> 논문 <input type="checkbox"/> 특허 <input type="checkbox"/> 기술이전 <input type="checkbox"/> 시작품 <input type="checkbox"/> 시제품 <input type="checkbox"/> 사업화 <input type="checkbox"/> 기타 ()	
핵심 근거성과 <small>(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1건씩)</small>	논문	(논문명/학술지명/게재연월)
	특허	(특허명/출원번호/출원국)
	기타	(주요 관련사항)
연구단계	<input type="checkbox"/> 기초 <input type="checkbox"/> 응용 <input type="checkbox"/> 개발 <input type="checkbox"/> 기타 ()	
연구단계(TRL)	<input type="checkbox"/> 1.기본원리파악 <input type="checkbox"/> 2.기본개념정립 <input type="checkbox"/> 3.기능 및 개념검증 <input type="checkbox"/> 4.연구실환경 테스트 <input type="checkbox"/> 5.유사환경 테스트 <input type="checkbox"/> 6.파일럿 현장테스트 <input type="checkbox"/> 7.상용모델 개발 <input type="checkbox"/> 8.실제환경 최종테스트 <input type="checkbox"/> 9.상용 운영	
과학기술표준분류	<input type="checkbox"/> 대분류 () <input type="checkbox"/> 중분류 () <input type="checkbox"/> 소분류 ()	
핵심성과 설명	<p style="text-align: center;">(이미지)</p> <p>※ 핵심성과를 한눈에 나타낼 수 있는 사진, 개념도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성과 설명)</p> <p>※ 연구의 필요성,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활용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왼쪽 이미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500자 내외로 작성</p>
	<p style="text-align: center;">(이미지)</p> <p>※ 핵심성과를 한눈에 나타낼 수 있는 사진, 개념도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성과 설명)</p> <p>※ 연구의 필요성,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활용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왼쪽 이미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500자 내외로 작성</p>
인터넷 참고자료 링크(URL)	(유튜브 등, 예시 : https://www.youtube.com/watch?v=FccTgrsMzZk)	
	(언론보도 등, 예시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62011030&ytlog_tag@naver)	
동 연구 분야 국내 전문가	(이름)	(소속기관)
	(이름)	(소속기관)
	(이름)	(소속기관)

[별지 제21호 서식] <신 설>

경상기술료 납부계획서 및 산정내역

(단위 : 원)

연구개발 과제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A)	기업부담금(B)	기타() (C)	청산환수금(D)	계 (A+B+C-D)		
연구성과활용 현황	성과활용명							
	성과활용일			성과활용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직접실시			
	* 지재권이 특허(출원등록) 인 경우	명 칭			일 자			
		번호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및 산정내역	구분	연도	수입금액 (A)	연구개발성과 제품 점유비율 (B)	연구개발성과 기여도 (C)	연구개발성과 기여 매출액 (D=A*B*C)	경상기술료 요율 (E)	징수대상 경상기술료 (F=D*E)
	※ 환수기본료 = 정부출연금 사용액 × 경상기술료 요율							
	1차 년도	0000년						
	2차 년도	0000년						
	3차 년도	0000년						
	4차 년도	0000년						
	5차 년도	0000년						
합 계								
기타 특기사항								
<p>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결과물의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및 산정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직인)</p>								

■ 양식 개요

“경상기술료납부계획서 및 산정내역”은 영리법인이 기술료 납부 계획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제출 후 연도별 경상기술료 매출액 납부 계획을 전문기관에 보고할 시 제38조 11항의 단서에 해당할 경우 제38조 11항 1호부터 5호까지의 제출 서류를 갈음하는 용도로 사용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 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성과활용명 : 기업화에 활용코자 하는 기술 명칭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직접실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으로 기재
- 연구개발성과 기여도 : 영리법인이 산정한 연구개발성과의 기여도(관련 제품 등의 매출 중 해당 기술)를 작성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